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미운행 차량 증가 및 운행거리 감소를 감안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령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2020년 하반기(2020년 7월 1일~12월 31일) 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3. ~ 2020.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를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40조제3항에 따른 차령이 202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의 기간 중 만료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2 제2호 가목 중 “제1호 비고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를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와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1. 차령 (생 략) 비고 (생 략) <u><신 설></u>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0조제3항에 따른 차령 <u>이 2020년 7월 1일부터 같</u> <u>은 해 12월 31일의 기간</u> <u>중 만료되는 여객자동차운</u> <u>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u> <u>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중</u> <u>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 만</u> <u>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u> <u>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u> <u>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u> <u>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u> <u>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u> <u>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u> <u>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u> <u>로 한다.</u>
2. 차령 연장요건 (생 략) 가. 제1호에 따른 차령(제40	(현행과 같음) 가. -----

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하고, 제1호 비고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
와 나목에 따라 1년의 차
령이 더해진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 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 를 받아야 한다. 나. (생 략)	----- ----- ----- ----- 나.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32